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등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27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012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등 (안 제34조제9항)	3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안 제34조제10항 및 제68조의3제7항 신설)	11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012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25.

다. 회 부 일 : 2025. 4.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채 위험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

령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제34조제10항 신설, 제68조의3제7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안 제34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생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⑨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 ----- ----- -----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을----- ----- -----이 조----- ----- ----- ----- ----- ----- ----- ----- ----- -----

현행	개정안
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의무 이용 대상을 현행 공공 건설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급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4조제9항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²⁾(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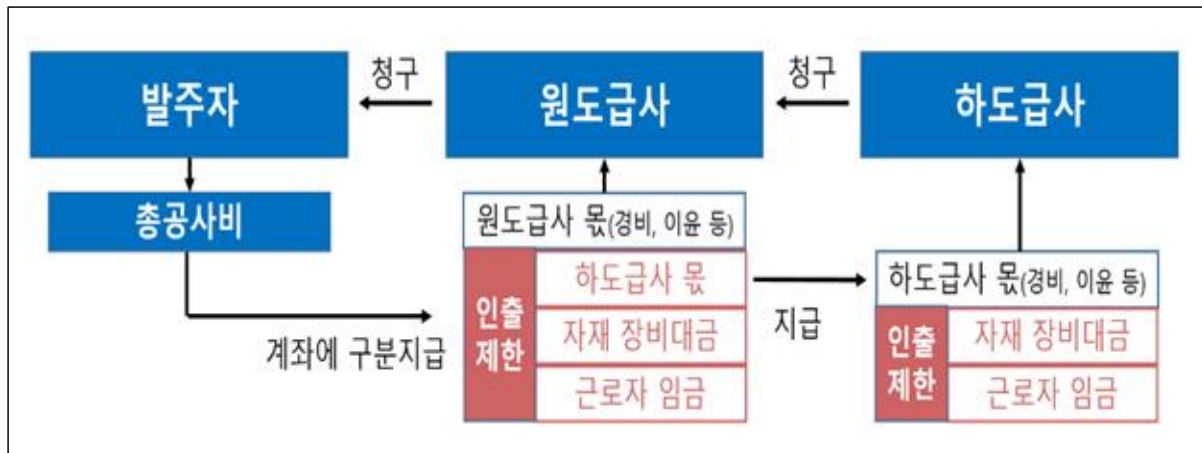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흐름도】



※자료: 국토교통부

동 규정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미지급과 이로 인한 임금 체불로부터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에 현행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신설³⁾된 것으로,

현행법은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의무 이용이 공공 건설공사로 한정되는데,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으로 공공 건설공사 외에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를 추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공공 건설공사와 같이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

3)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5991호, 2018.12.18. 일부개정, 2019.6.19. 시행)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1598호,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안원문 및 검토보고(2018.2.) 참고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범위를 현행법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⁴⁾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시스템⁵⁾으로 수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⁴⁾으로 공공건설공사와 관련된 시스템⁵⁾이므로,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개정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의무 이용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민간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⁶⁾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현행	개정안	비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 ※ 안 제1호로 이동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현행법 본문에서 안 제1호로 이동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이용 대상을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청구하여 수령해야 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	이용 가능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5) 공공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금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체불e제로(국가철도공단) 등

6)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 이콘 등

현행	개정안	비고
	<u>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u>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청구하여 수령해야 함.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됨.	(현행과 같음)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일부 건설업체에서 민간의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사용 중이므로, 이를 의무화하여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인센티브(업체 평가 시 가점부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할인 등) 확대를 통해 민간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시스템에 제출된 하도급 업체의 대금지급 상세내역서를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 최저 비용 책정자료로 활용하여 공사대금 삭감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함.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관련 인력 증원 등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바, 해당 비용 및 이윤 등과 관련한 적정 공사비가 계상될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기한 연장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안 제34조제10항 및 제68조의3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생략) ⑨ (생략) <u><신설></u>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생략) <u>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 ⑥ (생략) <u><신설></u>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개정안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및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4조제2항 및 현행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7)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하도급공사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라 함)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68조의3제1항 및 현행법 시행규칙 제34조의48)는 수급인 또는

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12. 12. 5.>
2. 삭제 <2014. 2. 6.>
3. 삭제 <2002. 9. 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8)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함)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34조제3항⁹⁾ 및 제68조의3제3항¹⁰⁾에서 각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¹¹⁾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¹²⁾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9)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0)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1. 적용기준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요율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산정 방식이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달라,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실제 지출하는 비용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¹³⁾

이는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자 및 지역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¹⁴⁾¹⁵⁾

공사규모		요율
50억원 미만		0.081%
50억원~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300억원 미만		0.075%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터키·대안공사		0.084%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공사에정금액을 말함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081%
건축공사	0.080%
산업·환경설비공사	0.075%
조경공사	0.084%

나.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생략)

다.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생략)

13) 이광표, 전영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 중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p.10. 참고

14)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및 지역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안 제34조제9항에서 도급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안 제34조제10항 및 안 제68조의3제7항은 안 제34조제9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지원 사례와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청구·수령·지급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건설공사에 있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5(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6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

15) 대한전문건설신문, “경남도,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50% 지원한다”, 2025.1.13.

울산신문, “울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업체당 최대 3,000만원” 2025.2.10.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보증서 발급 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을 제고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게 하는 경우 현재의 비용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91